

[별표 1] <개정 2008.9.3>

법 제3조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관장(제2조관련)

구 분	기 관 장
1. 입 법 부	국회사무총장·국회도서관장
2. 행 정 부	가. 감사원장, 대통령실장, 국가정보원장,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나. 국무총리실장,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, 금융위원회 위원 장,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다. 중앙행정기관의 장 라.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 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) 마. 대학교 및 대학의 장, 전문대학의 장 바. 교육감·교육장
3. 사 법 부	법원행정처장, 각급 법원 및 법원지원의 장
4. 헌 법 재 판 소	사무처장
5. 선거관리위원회	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, 시·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 국장